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614호 2021. 8. 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8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92호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 공시
송달 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4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53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8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1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89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담당관 [032-560-414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8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13호(2020.12.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필지 반영 및 사업 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6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 명칭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 면적 : 353m²
- 규모 : L=42m, B=7.8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대표이사 박정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왕길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20. 4. 6. ~ 2021. 06. 30.
- (변경) 2020. 4. 6. ~ 2022.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계				3,555	3,555	-	353	353	-	-	-				
1	원창동	213-60	대	2,373	2,300	감)73	73	-	감)7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 *동 ***호(간석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지상권 설정	지적분할
	원창동	213-65	대	-	73	증)73	-	73	증)7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 *동 ***호(간석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지상권 설정	
2	원창동	213-61	대	137	137	-	137	137	-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3	원창동	220-5	잡	954	902	감)52	52	-	감)52	국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원창동	220-8	잡	-	52	증)52	-	52	증)52	국 (기획재정부)					
4	원창동	220-6	잡	91	91	-	91	91	-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R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서구)
2. 사업주체 : (주)센테리움개발 (대표 서종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비 1층3호(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
 - 나. 대지면적 : 19,95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96,327.0760㎡ (지하 2층, 지상 3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 4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1개동, 판매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마. 사업비 : 329,213,963천원
4. 사업기간 : 2021. 6. 17. ~ 2024. 7 .16.

5. 변경사항

- 세부내역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차 변경 내역

- 공 사 명 : 검단신도시 RC4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
- 변 경 내 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대지면적(m ²)		19,958.0000m ²	19,958.0000m ²	-	
건축면적(m ²)		6,678.5287m ²	6,694.5793m ²	+16.0506m ²	
연 면 적 (m ²)	지상층	66,047.2864m ²	66,047.2844m ²	-0.0020m ²	
	지하층	30,279.7654m ²	30,279.7916m ²	+0.0262m ²	
	계	96,327.0518m ²	96,327.0760m ²	+0.0242m ²	
건폐율(%)		33.46%	33.54%	+0.08%	(법정: 60%)
용적률(%)		329.63%	329.63%	± 0	(법정:330%/297%(주거))
용적률 산정 연면적		65,786.7897m ²	65,786.7877m ²	-0.0020m ²	
시설별 면적표	공 동 주 택	80,626.4615m ²	80,626.4620m ²	+0.0005m ²	
	업무시설(오피스텔)	6,168.0928m ²	6,167.5962m ²	-0.4966m ²	
	근 생 시 설	6,230.6735m ²	6,231.0128m ²	+0.3393m ²	
	판 매 시 설	3,301.8240m ²	3,302.0051m ²	+0.1811m ²	
	합 계	96,327.0518m ²	96,327.0760m ²	+0.0242m ²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차 변경내용

공 사 명 : 인천검단 RC4BL 주상복합시설

1. 건축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각 동별 보행 램프 로비 내부에 설치	지하 주차장 면적 변경 - 각 동별 로비 구획 변경 보행 램프 로비 외부에 설치	단차 없는 로비 환경 형성	
	제습실 있음	오피스텔 면적 변경 - 오피스텔 공용부 구획 변경	오피스텔 공용부 제습실 삭제 전기 설비공간 구성	
	판매시설 앵커상가 설비 구획 일부 미반영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 상가 구획 변경 및 기계, 전기 설비 구획 설치 - 브릿지 위치 변경	판매시설 - 개별상가 구성으로 분양성 고려 근린생활시설 - 상가 구획 수정, 기계-전기소방 설비 구획 설치	
	-	오피스텔 면적 변경 - 공용부 구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오피스텔 공용부 제습실 삭제 전기 설비공간 구성	
	-	지하 주차장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면적 변경	공동주택 오피스텔 각 동별 로비 구획 및 상가 구획 변경 및 기계, 전기 설비 구획 설치에 따른 면적 변경	
	-	오피스텔 면적 변경 - 오피스텔 공용부 구획 변경	오피스텔 공용부 제습실 삭제 전기 설비공간 구성	
	일반 양개도어	지하 주차장 면적 변경 - 폐기물보관소 방풍구조문 설치 및 구획변경	폐기물보관소 주변 약취 방지 효율적인 공간구성에 따른 구획 수정	
2	판매시설 앵커상가 설비 구획 일부 미반영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세부 구획 변경 - 상가 구획 변경 및 기계, 전기 설비 구획 설치 - 브릿지 위치 변경	판매시설 - 개별상가 구성으로 분양성 고려 근린생활시설 - 상가 구획 수정, 기계-전기소방 설비 구획 설치	
3	실외기 그릴 창호 (1,000X2,370mm)	하향식 피난공간 개선으로 외벽체 변경 (250mm→150mm) 실외기 그릴 창호 변경 (1,000X2,370mm→1,100x2,370mm)	하향식 피난공간 개선 (하향식 피난구 영역 및 실외기 간섭 최소화)	
4	AW 창호, 배연창 틸트창	제작에 의한 전문시공업체에 의해 창 형태 변경 (에너지 효율 향상, 형별상세 변경, 크기 변경 없음)	오피스텔 창호 변경 (AW→PW, 배연창 틸트창→미서기창)	

2. 구조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	-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3. 토 목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	-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4. 조 경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	-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5. 기 계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지하 주차장 면적 변경 - 건축계획 (바탕도면) 변경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6. 전 기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전기설비 배치 변경	지하 주차장, 오피스텔 면적 변경 - 전기설비 배치 변경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2	미구획에 따른 전기설비배치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세부 구획 변경 - 실별 구획에 따른 각 실별 전기설비배치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7. 통 신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통신설비 배치 변경	지하 주차장, 오피스텔 면적 변경 - 통신설비 배치 변경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2	미구획에 따른 수구배치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세부 구획 변경 - 실별 구획에 따른 각 실별 수구배치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변경	

8. 소방기계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지하 주차장, 오피스텔 면적 변경 - 헤드 배열 변경 및 추가	주동 출입구 구획 변경 및 추가로 인한 헤드 배열, 헤드 배열 내진설비 변경.	
2	-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세부 구획 변경 - 배관 및 헤드 배열 변경 및 추가	근린생활시설 구획 변경 및 추가로 인한 배관 및 헤드 배열, 헤드 배열 내진설비 변경.	

9. 소방전기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1	-	지하 주차장 면적 변경 - 감지기 위치 및 유도등 추가	주동 출입구 구획 변경으로 인한 감지기 배열 유도등 위치 변경 및 추가	
2	-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세부 구획 변경 - 감지기 및 시각경보기 유도등 변경 및 추가	근린생활시설 구획 변경으로 인한 감지기, 시각경보기, 유도등 위치 변경 및 추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0-1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8.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8-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2-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0-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97	인천광역시 서구 두일로 167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97-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70번길 5 (연희동)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61	인천광역시 서구 목창로207번길 59 (원창동)	20131202	목창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273	인천광역시 서구 두류물로78번길 3 (오류동)	20090922	두류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8-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21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민간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상승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128 (가좌동, 풍덕빌라)	건물말소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좌동, 가좌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명명	풍덕빌라
3	인천광역시 서구 견지로250번길 102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코스출
4	인천광역시 서구 영가길로 3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잠사는 동네라는 뜻의 영가길로 붙였던 옛 자연마을이름을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8번길 25-13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15-2 (신원동)	건물말소	20090922	가좌동의 동명을 따, 가좌동이란 명칭은 조선초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4-7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8-6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8-8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302번길 19-3 (향길동)	건물말소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92호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어(서구 견인보관소 경명대로265) 장기보관 중인 미반환 차량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미거주, 이사감, 무단 전출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년 8월 5일 ~ 2021년 8월 27일 (1개월)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명칭 :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 공시송달 공고
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 (경명대로265, ☎032-571-7714)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560-5941)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6항에 의거 과태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게 되며,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따라 차량이 매각되거나 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라며, 기간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보관차량을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하고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장기보관차량				비고
	성명	주소	등록번호	차명	견인일	보관장소	
1	김*표	인천시 동구 화수로 79번길 **	32루9407	포르테	2020. 3. 11.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2	(주)웅*건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	06나1873	에쿠스	2020. 3. 31.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3	노*호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37번길 **	12우7413	그랜저HG	2020. 5. 11.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4	유*숙 연*진	인천시 동구 화도진로 **	08두0123	재규어	2020. 9. 2.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5	(주)상*엔터 테인먼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5길 **	66무9674	벤츠E클래스	2020. 9. 11.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6	(주)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7번안길 **	36모7590	SM5	2020. 9. 17.	인천서구 견인보관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금지’ 권고 사항 이행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조문 삭제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문 정비
 -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21. 8.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112,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금지’ 권고사항 이행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조문 삭제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문 정비
 -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안 제6조제5호)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안 제6조제7호)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384,100천원 반영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활동”을 “가족 친화 활동”으로 한다.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u></p> <p>6. (생략)</p> <p>7. <u>소속 공무원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u></p> <p>8. (생략)</p> <p>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u>문화활동</u> 지원</p> <p>10.· 11. (생략)</p>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u></p> <p>6. (현행과 같음)</p> <p>7. <u>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u></p> <p>8. (현행과 같음)</p> <p>9. ----- ----- <u>가족 친화 활동</u> ----- -----</p> <p>10.· 11.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04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B-2)(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2	39	8,876.5	1-1	442.9		B-2	39	8,876.5	1	1,364.2	
			1-2	442.8							
			2	478.5							

2) 공동주택용지(B-5)(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5	55	5,579.4	10	485.2	B-5	55	5,579.4	10	1,002.3		
			11	517.1				3	624.1		
	56	3,032.8	3	260.0		56	3,032.8	3,032.8	4	655.6	
			4	255.5					10	575.1	
			5	255.5							
			6	255.5							
			7	253.2							
			10	289.6							
			11	285.5							

3) 공동주택용지(B-6)(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6	31	19,919.4	3	273.6	B-6	31	19,919.4	3	542.1		
			4	268.5				20	1,142.9		
			20	601.0							
			21-1	541.9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1-1, -1-2, -2 → 39-1 - 공동주택용지(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10, -11 → 55-10 ·56-3, -4, -5, -6, -7 → 56-3, -4 ·56-10, -11 → 56-10 - 공동주택용지(B-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3, -4 → 31-3 ·31-20, -21-1 → 3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

Ⅳ.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시	2021.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53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중1-53호선, 사업명: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52-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1-53호선)
- 명칭 :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L=525m, B=20m, A=10,434.1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서구 원창동	31-14	도	28	28	공	인천광역시				
1	변경	"	31-14	도	28	28	공	인천광역시				
2	당초	"	31-11	도	94	9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변경	"	31-11	도	94	9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당초	"	31-15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3	변경	"	31-15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4	변경	"	132-38	도	253	253	공	인천광역시				
4	변경	"	132-38	도	253	253	공	인천광역시				
5	당초	"	132-29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서구				
5	변경	"	132-29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당초	"	132-23	도	12	12	공	인천광역시				
6	변경	"	132-23	도	12	12	공	인천광역시				
7	당초	"	132-39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변경	"	132-39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8	당초	"	132-5	도	547	5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8	변경	"	132-5	도	547	5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9	당초	"	205-5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9	변경	"	205-5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	129-19	도	50	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0	변경	"	129-19	도	50	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1	당초	"	129-22	전	12	12	공	인천광역시 서구				
11	변경	"	129-22	전	12	12	공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당초	"	129-21	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12	변경	"	129-21	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	당초	"	129-20	전	7	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	변경	"	129-20	전	7	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	당초	"	131-6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	변경	"	131-6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5	당초	"	132-40	전	465	465	공	인천광역시 서구				
15	변경	"	132-40	전	465	465	공	인천광역시 서구				
16	당초	"	132-34	전	257	18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6	변경	"	132-42	전	186	18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	당초	"	131-7	대	538	538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	변경	"	131-7	대	538	538	공	인천광역시 서구				
18	당초	"	130-11	전	367	36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8	변경	"	130-11	전	367	36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9	당초	"	130-13	전	104	104	공	인천광역시 서구				
19	변경	"	130-13	전	104	10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0	당초	"	154-2	도	684	6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0	변경	"	154-2	도	684	6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1	당초	"	155-10	대	370	3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1	변경	"	155-10	대	370	3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2	당초	"	153-7	도	55	5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2	변경	"	153-7	도	55	5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3	당초	"	152-54	임	5	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3	변경	"	152-54	임	5	5	공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당초	"	152-48	전	447	4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24	변경	"	152-48	전	447	4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25	당초	"	152-50	전	481	48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5	변경	"	152-50	전	481	48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6	당초	"	152-52	임	1,645	1,64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6	변경	"	152-52	임	1,645	1,64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7	당초	"	152-42	전	478	478	공	인천광역시 서구				
27	변경	"	152-42	전	478	478	공	인천광역시 서구				
28	당초	"	152-46	전	724	72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8	변경	"	152-46	전	724	72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9	당초	"	152-3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9	변경	"	152-3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0	당초	"	152-45	전	703	70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0	변경	"	152-45	전	703	70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1	당초	"	150-9	전	384	3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1	변경	"	150-9	전	384	3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2	당초	"	150-8	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2	변경	"	150-8	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3	당초	"	143-21	전	419	419	공	인천광역시 서구				
33	변경	"	143-21	전	419	419	공	인천광역시 서구				
34	당초	"	144-2	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4	변경	"	144-2	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5	당초	"	408-9	전	985.1	985.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5	변경	"	408-9	전	985.1	985.1	공	인천광역시 서구				

위 치 도

위치도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계 획 서

1. 변경 사유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원창동 132-3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3호선)

나) 명 칭 :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목적 (변경없음)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로와 접하는 중1-53호선 중 미개설 (원창동 동일폐차장부 근) 부분을 개설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4.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5.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L = 525m, B = 20m, A = 10,434.1m²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2008. 2월 ~ 2020. 12. 31

7. 공사개요 (변경없음)

- 1) 토 공 : 흙깎기(토사) 11,765m³, 흙쌓기(노상) 3,193m³, 흙쌓기(노체) 6,346m³,
사토(토사) 3,079m³
- 2) 배 수 공 : 배수관(D300) 76m, 배수관(D600) 1,036m, 빗물받이 51개소
맨홀 차도용(3호) 1개소, 맨홀 보도용(2호) 16개소, 맨홀 보도용(3호) 1개소,
U형측구(0.6X0.6) 80m, 집수정(1.1X1.1) 1개소, 수로암거(1@2.5X2.0) 24.7m
- 3) 옹 벽 공 : 보강토옹벽 L=13.5m, B=32.0m
- 4) 포 장 공 : 표층(T=5cm) 81a, 기층(T=15cm) 163a (7.5cm 2회),
보조기층(T=25cm) 2,228m³, 동상방지층(T=30cm) 2,676m³
- 5) 보 도 공 : 보차도경계블럭(인조화강석) 1,047m, 도로경계블럭(150X150X1000) 1,023m
보도블럭 1,999m²
- 6) 조 경 공 : 가로수(은행나무 H4.0XB10) 127주, 수목보호덮개(120X80H) 127조
- 7) 부 대 공 : 1식

8.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 사업명 :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사업
 - 【명칭】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 L=179m, B=6m 중
금회 개설 L=23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당하동	1133	도	1,603.4	4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 동 244)				
계				1,603.4	4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인천 서구 당하동	1133	은행나무	D25, H5	1주		임*동	인천 서구 청마로 ***번길**			
			살구나무	D25, H5	1주						
			배나무	D15, H3	1주						
			배나무	D10, H2	1주						
			감나무	D30, H7	1주						
			감나무	D20, H7	1주						
			장미	2.0×0.8, H1.5	2그루						
			장미	1.0×0.8, H2.0	2그루						
진달래	1.0×1.0, H1.3	3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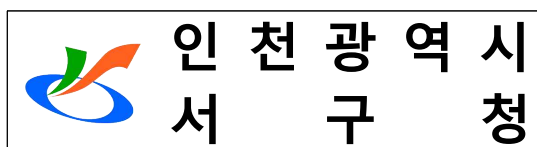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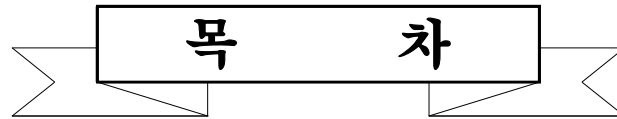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신청서

2021. 08.





목 차

I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1. 실시계획인가신청서
2. 위 치 도
3. 사 업 계 획 서
4. 편입용지조서 및 용지도
5.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6.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
7.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I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1. 실시계획인가신청서
2. 위 치 도
3. 사 업 계 획 서
4. 편입용지조서 및 용지도
5.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6.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
7.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1. 실시계획인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전화번호: 032-560-5772)
	법인명	서구청	법인등록번호 137-83-00440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전화번호: 032-560-5772)

신청내용

사업명칭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	본 과업은 당하동 1133번지 일원 미집행 잔여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33번지 일원		사업면적		소(국)3-1호선	43 m ²		
					계	43 m ²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총당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12월 30일		
토지이용현황 (m ²)	지목별	계 (m ²)	전 (m ²)	답 (m ²)	임 (m ²)	도 (m ²)	구 (m ²)	잡 (m ²)
	소(국)3-1호선	43				43		
	계	43				43		
토지이용계획 (m ²)	용도별	도로 (m ²)						
	소(국)3-1호선	43						
	계	43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2021 년 8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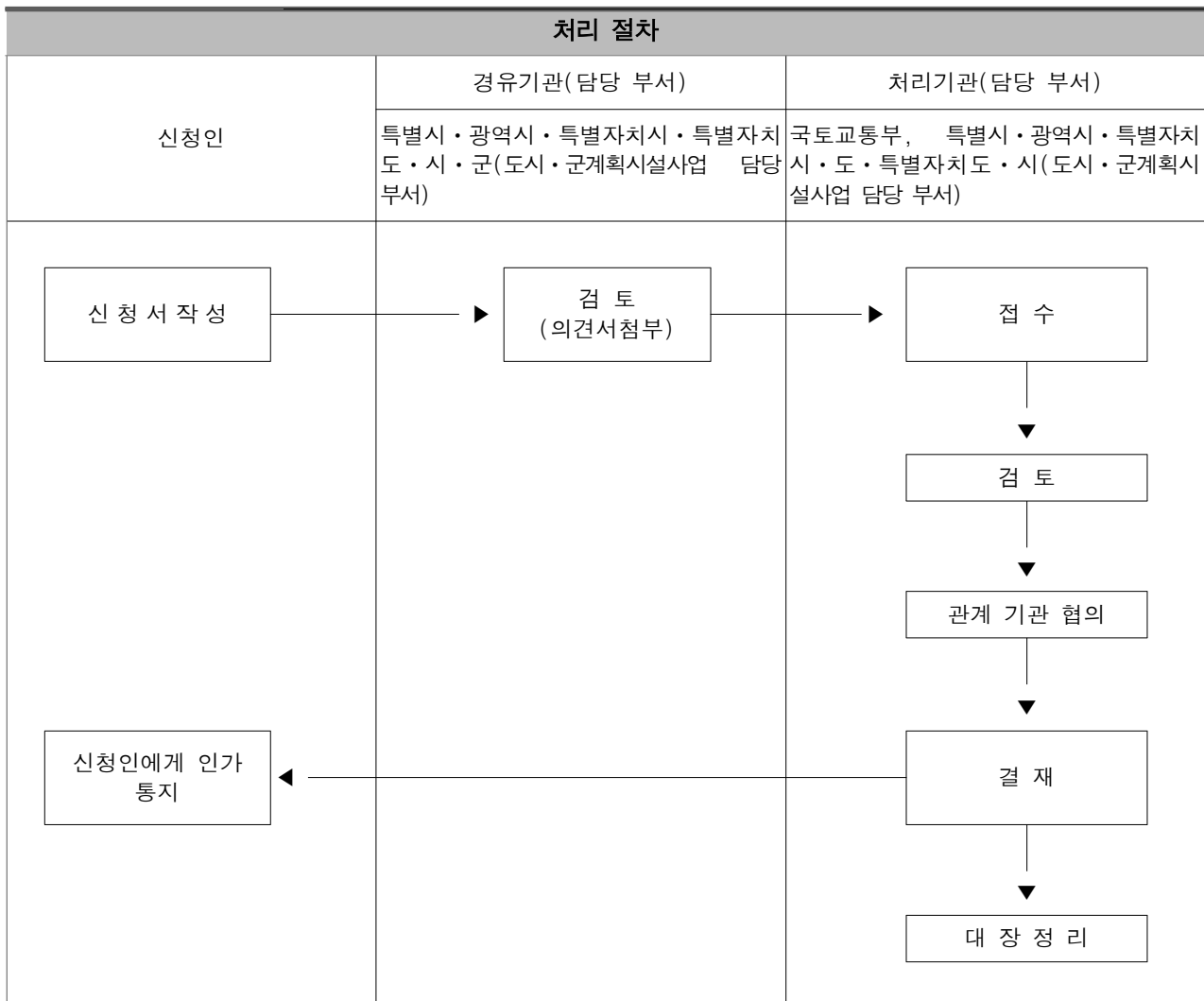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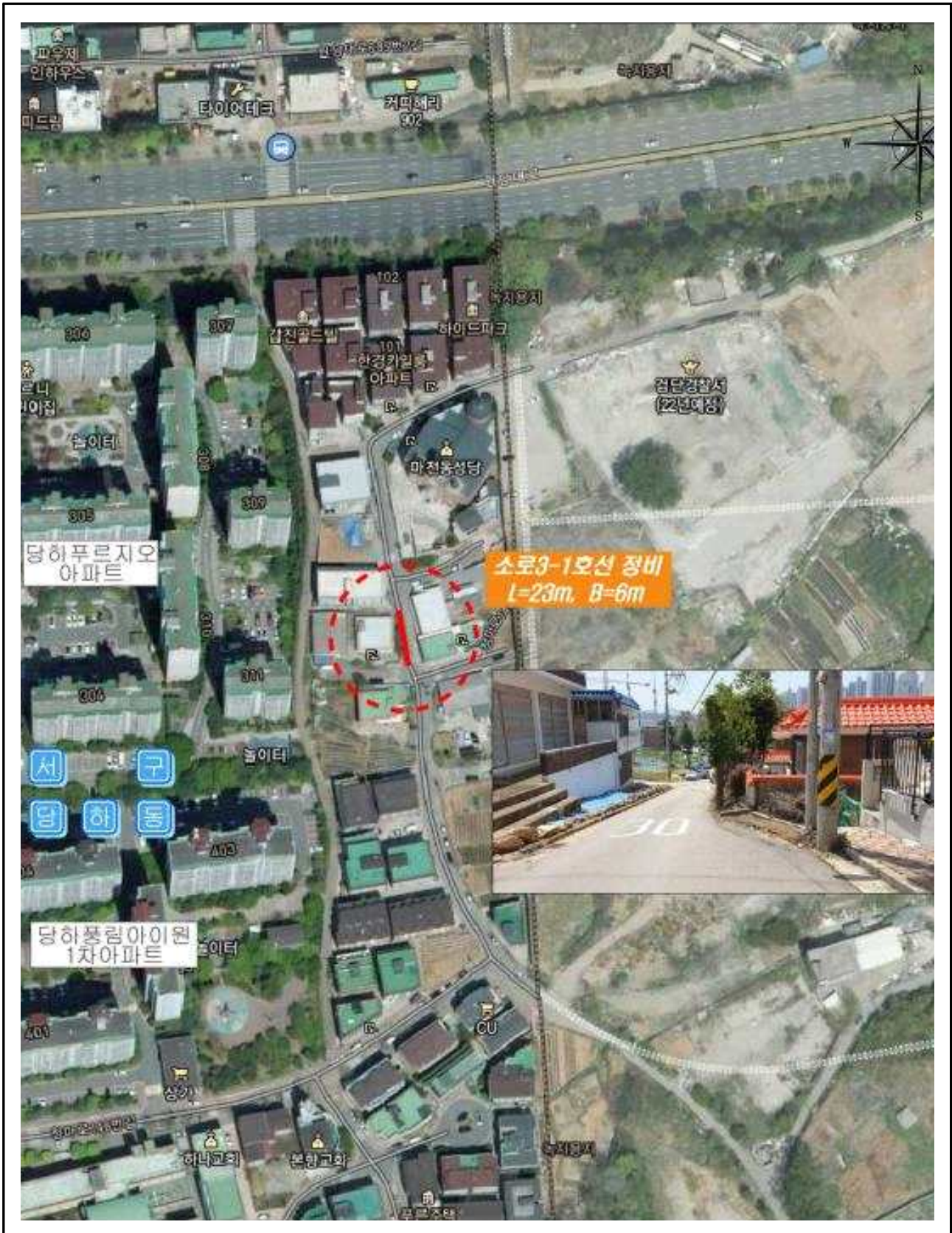
(뒤쪽)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p>	



2. 위 치 도

위치도



3.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명칭

-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의목적

- 본 과업은 당하동 1133번지 일원 미집행 잔여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33번지 일원

4. 사업현황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3	1	6	국지 도로	179	소로2-6	지구계	일반 도로	(1999.06.23)	

5. 사업개요

- 1) 사업규모

구 분	연 장 (L)	폭 원 (B)	시행면적(m ²)
소(국)3-1호선	23m	6.0m	43m ²
계	23m	6.0m	43m ²

2) 공사개요

- 가. 토 공 : 기존포장 및 구조물깨기 15m³, 수목 철거 6주
 흙각기 30m³, 터파기 44m³, 되메우기 39m³, 사토 31m³
- 나. 배 수 공 : 오수받이 1개소, 오수관(D150) 27m
- 다. 구조물공 : 벽돌(담장)쌓기 21m
- 라.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 40m²,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550m²,
 아스팔트 덧씌우기 43m², 경계석(150X200) 23m,
 경계석(200X250) 2m
- 마. 부 대 공 : 차선도색 1식, 교통표지판 설치 1EA, 차선규제봉 설치 6EA

6.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2021년	비 고
사업비	50	50	

2) 자금조달방안

- 사업비 재원 : 인천광역시 서구청 예산으로 사업시행

7. 사업기간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0일

8.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4. 편입토지조서 및 용지도

1) 편 입 토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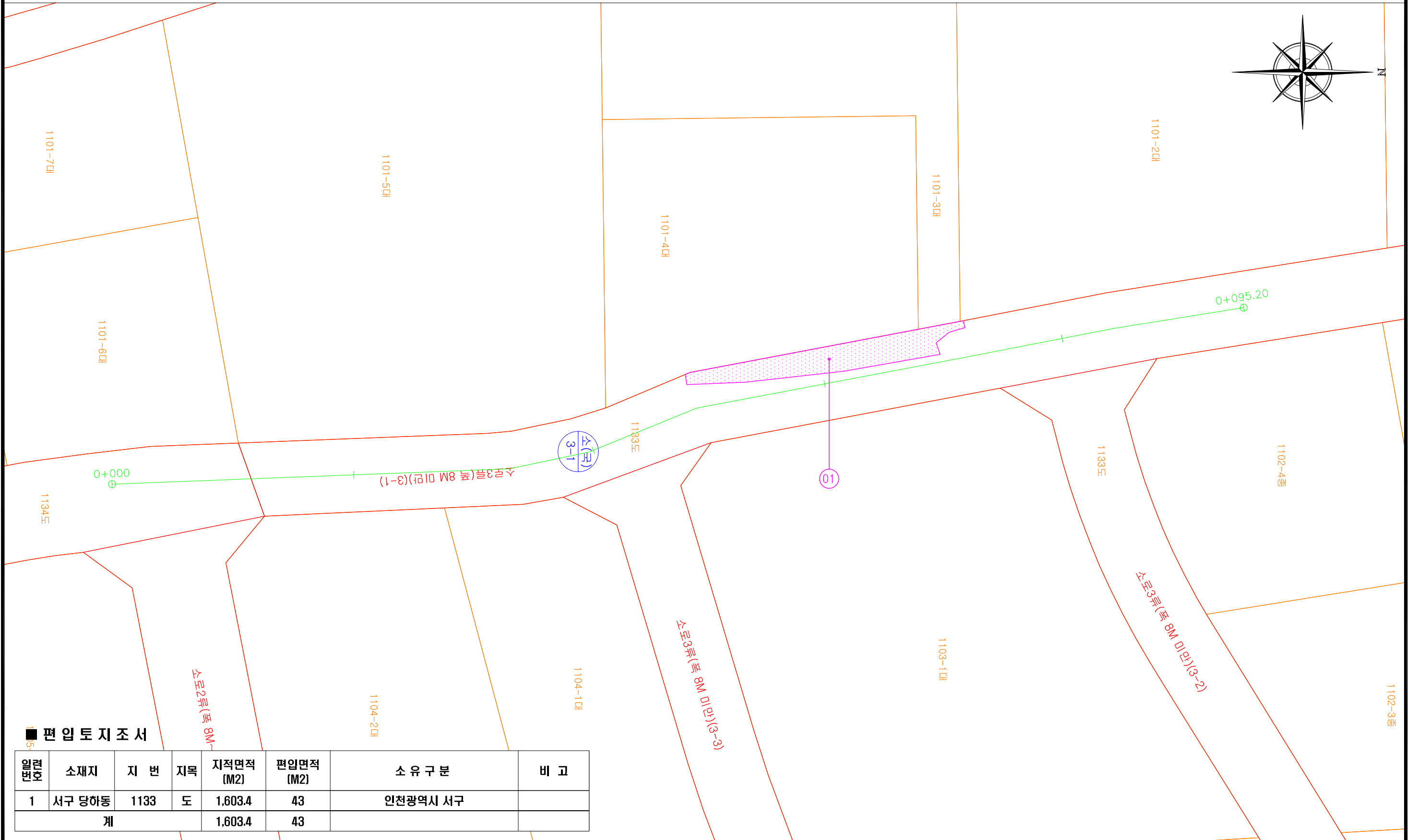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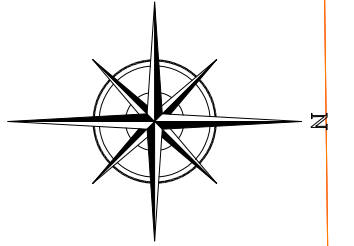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로 3-1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자외의 권리			비 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서구 당하동	1133	도	1,603.4	43	인천광역시 서구	국					

2) 용 지 도

용 지도

S = 1 : 300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구분	비 고
1	서구 당하동	1133	도	1,603.4	43	인천광역시 서구	
계				1,603.4	43		

공사명	시행청	용역회사	축척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명	도면번호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유 엔지니어링 52	S = 1 : 300	2021. 8	이종민	변순식	임성남	용 지도	

5.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1249-2012-006644



[토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33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2년5월4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33	도로	1603.4㎡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2년5월4일 제34029호		소유자 인천광역시서구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1년 8월 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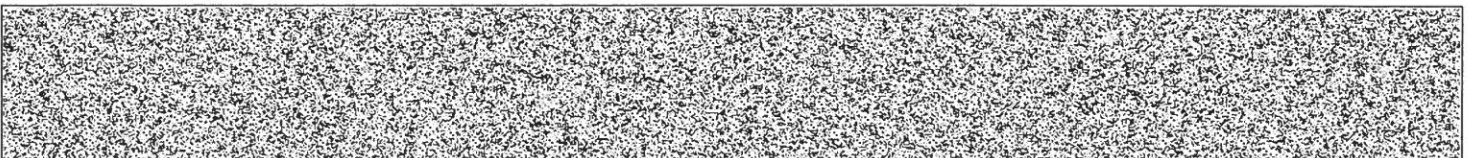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4202120092010810101200310JM0066551ENG14407141112

발급확인번호 AAKA-QKOV-6443

발행일 2021/08/03

6.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

1) 지 장 물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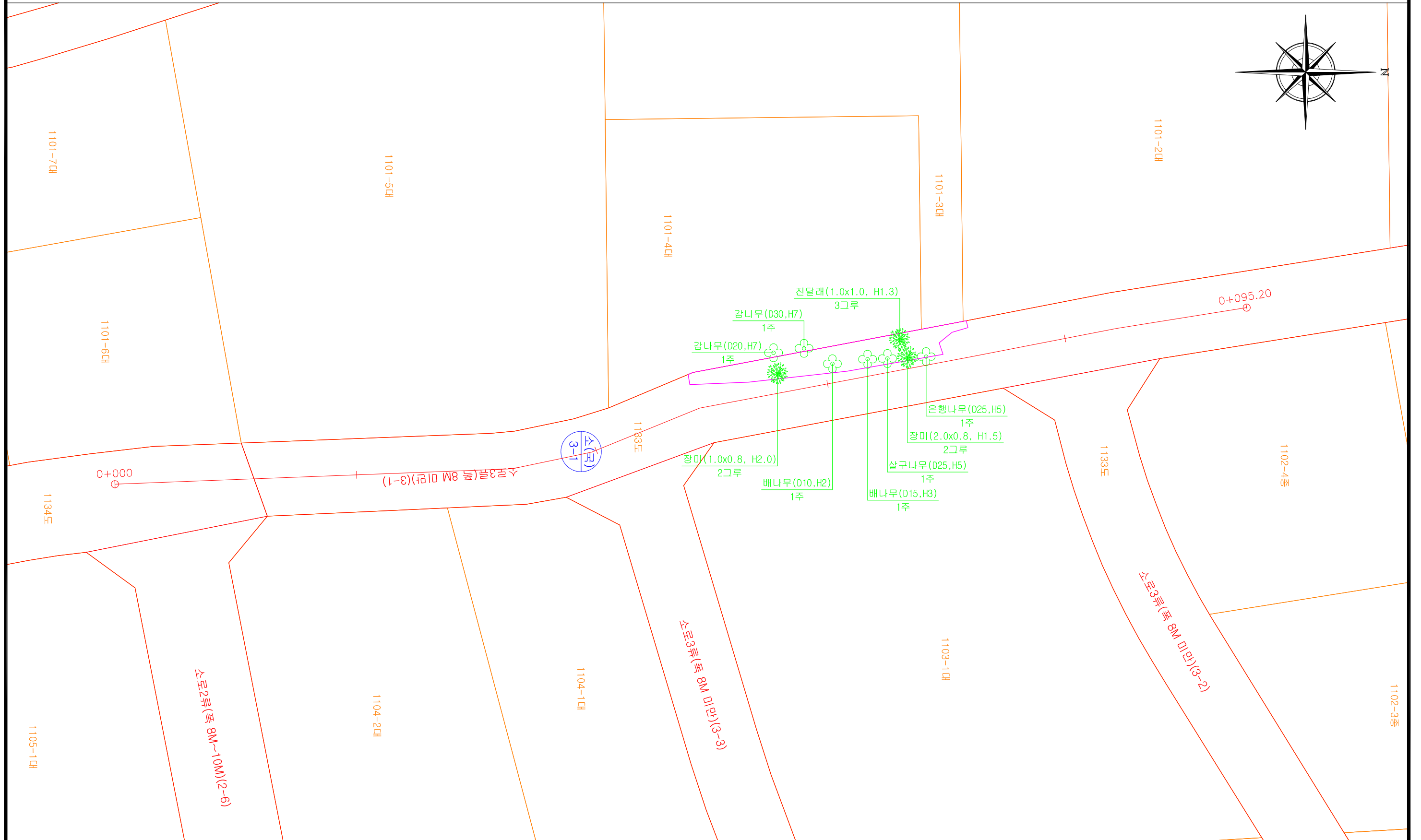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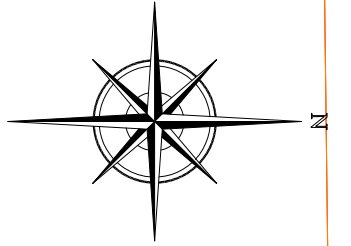
□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성명	주소
1	당하동 1133	은행나무	025, H5	1	주	임채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48번길37
		살구나무	025, H5	1	주		
		배나무	015, H3	1	주		
		배나무	010, H2	1	주		
		감나무	030, H7	1	주		
		감나무	020, H7	1	주		
		장미	2.0×0.8, H1.5	2	그루		
		장미	1.0×0.8, H2.0	2	그루		
		진달래	1.0×1.0, H1.3	3	그루		

2) 지 장 물 도

지장물도

S = 1 : 300



공사명	시행청	용역회사	축척	설계일자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	설계자	도면명	도면번호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유엔지니어링 60	S = 1 : 300	2021. 8	이종민	변순식	임성남	지장물도	

7.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1) 현 황 측 량 도
- 2) 표 준 횡 단 면 도
- 3) 계 획 평 면 도
- 4) 철 거 계 획 평 면 도
- 5) 오 수 관 상 세 도
- 6) 오 수 받 이 상 세 도
- 7) 벽 돌 (담 장) 상 세 도
- 8) 교 통 안 전 표 지 판 상 세 도
- 9) 차 선 규 제 봉 상 세 도
- 10) 철 거 상 세 도

의견서

일시	2021.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당하지구 소로3-1호선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수입증지로 제한된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2021.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083, FAX 032-560-272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전의 수입증지로 제한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수료 납부편의 증진을 도모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규격 :”을 “규격:”으로, “30mm이내”를 “30mm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수동인증기 :”를 “수동인증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민원처리기기 :”를 “민원처리기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를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p> <p>1. <u>규격</u> :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이내</p> <p>2. 색채</p> <p>가. <u>수동인증기</u> : 초록색</p> <p>나. 무인민원발급기, <u>민원처리기기</u> : 검은색</p> <p>② (생략)</p>	<p>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 ----- -----.</p> <p>1. <u>규격</u>: ----- 30mm 이내</p> <p>2. ---</p> <p>가. <u>수동인증기</u>: -----</p> <p>나. ----- <u>민원처리기기</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생략)</p> <p>② <u>신용카드 및 전자화폐</u>,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신용카드, 전자화폐 및</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등 조문 변경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수수료 삭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수료 신설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
- 「위생용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으로 인하여 위생분야 수수료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2021.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083,
FAX 032-560-272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등 조문 변경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 1의 1.일반행정분야 (7))
-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 1의 7.환경분야 (3))
- 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 4.농수산업분야 (68))
- 라. 「수산업법」 과 「내수면어업법」 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 「양식산업발전법」 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 4.농수산업분야 (29),(41),(69)~(91))
- 마. 「위생용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으로 인하여 위생분야 수수료 삭제 (안 제3조 별표 1의 8.위생분야 (1)~(6))
- 바. 개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3조 별표 1의 4.농수산업분야 (2),(35),(39),(43),(44), 12.교통행정분야 (1), 13.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3),(9),(19))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	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삭제>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삭제>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삭제>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2016.12.30. 삭제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2016.12.30. 삭제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68)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9)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7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9,000원	
(7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7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7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7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75)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7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7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7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7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8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82)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8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500원	
(8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8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8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8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3,000원	
(9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91)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삭제>			
8. 위생분야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9.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수수료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10.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1.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12. 교통행정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3.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400원	
	20장 초과마다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 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800원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2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10차)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906,349m²

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8. 28. ~ 2022. 6. 30.

라. 주요내용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906,349	100.0	906,349	100.0	
주 거 용 지	89,314	9.9	89,314	9.9	
공 동 주 택 용 지	70,388	7.8	70,388	7.8	
준 주 거 시 설 용 지	18,926	2.1	18,926	2.1	
상 업 용 지	382,642	42.2	370,564	40.9	감) 12,078
중 심 상 업 용 지	80,550	8.9	80,550	8.9	
일 반 상 업 용 지	302,092	33.3	290,014	32.0	감) 12,078
주 상 복 합 용 지	221,650	24.5	221,650	24.5	
상 업 업 무 용 지	51,250	5.7	39,172	4.3	감) 12,078
공 공 업 무 용 지	29,192	3.2	29,192	3.2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32,168	47.7	444,246	49.0	증) 12,078
도 로	268,087	29.6	268,087	29.6	
공 원 · 녹 지	143,509	15.8	141,587	15.6	감) 1,922
근 린 공 원	47,575	5.2	45,653	5.0	감) 1,922
어 린 이 공 원	16,129	1.8	16,129	1.8	
소 공 원	9,881	1.1	9,881	1.1	
문 화 공 원	21,734	2.4	11,950	1.3	감) 9,784
방 재 공 원	-	-	9,784	1.1	증) 9,784
경 관 녹 지	44,036	4.9	44,036	4.9	
완 충 녹 지	4,154	0.5	4,154	0.5	
전 기 공 급 설 비	2,690	0.3	2,690	0.3	
가 스 공 급 설 비	50	0.0	50	0.0	
주 차 장	6,230	0.7	6,230	0.7	
학 교	1,389	0.2	15,389	1.7	증) 14,000
유 치 원	1,697	0.2	1,697	0.2	
광 장	3,816	0.4	3,816	0.4	
공 공 청 사	4,700	0.5	4,700	0.5	
기 타 시 설 용 지	2,225	0.2	2,225	0.2	
종 교 용 지	811	0.1	811	0.1	
주 유 소	1,414	0.2	1,414	0.2	

주1) 도로면적은 도로 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19,835m²) 제외 면적임(도로 총면적 287,922m²)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440-4513)
-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기획단(☎ 560-574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718-370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718-3742)

다. 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

-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도면포함)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21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30(2018. 2. 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사업시행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외 14필지
 - 나. 구역면적 : 53.855.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원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2, 에이동 2층

4.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

가. 내 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노유자시설(부지조성)] 설치

나. 건축계획

- 1) 대지면적 : 35,564.0m²
- 2) 건축면적 : 5,847.43m²(건폐율 : 16.44%)
- 3) 연 면 적 : 166,089.51m²(용적률 : 298.95%)
- 4) 층 수 : 지하3층, 지상29층
- 5)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1,218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 1) 도로(7,276.8m²) 개설 후 기부채납
- 2) 공원(8,165.2m²), 녹지(1,126m²), 공용주차장(423m²) 조성 후 기부채납
- 3) 노유자시설(1,300m²)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II.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III.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층)

IV.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또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